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27
----------	-------

발의연월일 : 2025. 8. 6.

발 의 자 : 김문수 · 박해철 · 박용갑
양부남 · 이재관 · 서영교
황명선 · 박지원 · 이광희
김영호 · 김남근 · 맹성규
이병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유치원에 대해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반 사실이 공표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알리미’ 내 개별 유치원 정보 또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분산된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 국민이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의2제1항 본문 중 “인터넷”을 “교육부 인터넷”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 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표한다.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 ----- ----- ----- ----- ----- ----- -----교육부 인터넷-----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